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984
----------	------

2020. 11. 3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0. 10. 16. 노식래 의원 제출 (2020. 10. 26. 회부)

2. 제안이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따른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인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및 대관, 적용 범위 등을 정의함 (안 제2조~제3조)
- 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에 관해 명시함 (안 제8조~제11조)
- 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3조~제17조)
- 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별첨

5. 검토의견

□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구성

- 이 조례안은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노식래 의원이 발의한 사안임.
- 제정안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및 대관의 정의(안 제2조), 이용료(안 제5조), 주차요금(안 제6조), 복합문화공간의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제18조), 복합문화공간 운영·관리의 위탁(안 제19조) 등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이와 유사한 조례와 그 구성 및 내용면에서 유사성을 지님.

□ 검토사항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정의 (안 제2조제2호)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란 노들섬¹⁾ 상단부에 조성된 생물서식공간(비오톱)과 옹벽, 군사보호시설, 도로를 제외한 공간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임. ‘14년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19년 12월 준공·개장된 시설로서, 주요시설은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음. 현재 해당 시설의 운영

1) 용산구 양녕로 445일대에 조성된 섬을 말함(안 제2조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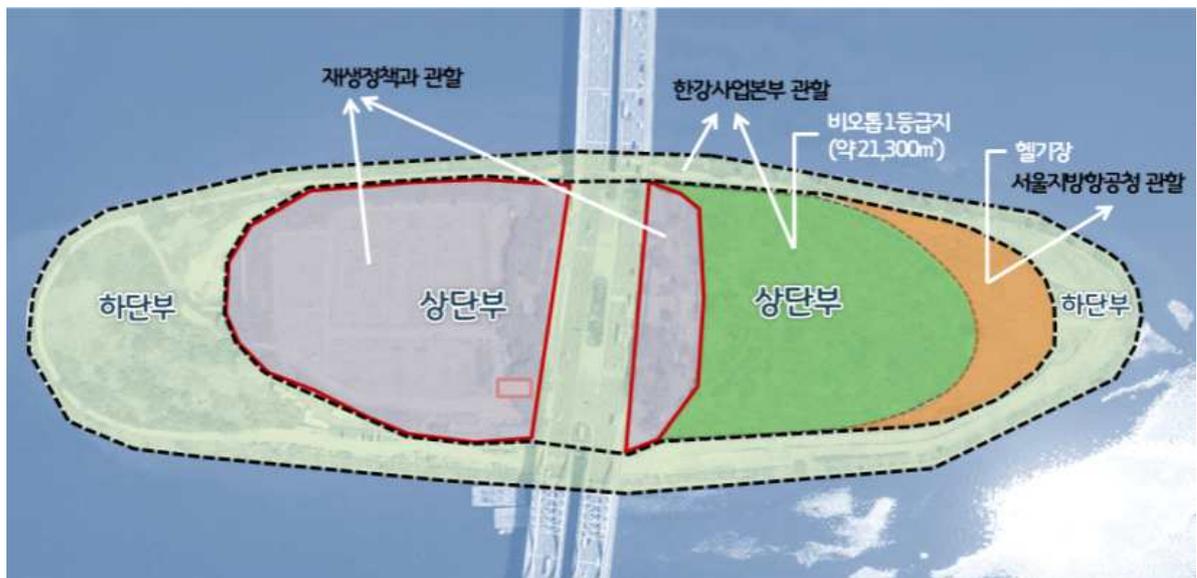
및 관리는 민간위탁('18.6.25~ '21.6.24. 3년)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음
(붙임-1 참고).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공간”)의 주요시설은 456석 규모의 공연장, 다목적시설(다목적홀, 강의실), 업무시설(운영사무실 등), 판매 시설(스페이스 445 등)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대관 가능한 7개소의 직영시설과 임대 가능한 15개의 사용자 허가지설로 구분됨(붙임-2 참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시설현황>

시 설	규모(㎡)
대 지 면 적	119,854 (상단 60,818, 하단 59,036)
연 면 적	9,349
공 연 장(456석)	1,985
다목적시설(다목적홀, 강의실)	1,252
업무시설(운영사무실, 노들오피스 등)	2,476
판매시설(스페이스 445, 래코드 등)	1,330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노들서가, 공유주방, 유직편, 자전거 문화 라운지, 레스토랑 등)	2,306
▶ 조경(27,068㎡), 보행육교 574㎡, 주차장 : 99대(장애인 5대 포함)	

<노들섬 부지별 관리주체>



- 한편, 서울시는 그 동안 ‘노들섬 특화공간’으로 사용하던 명칭을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들섬의 조성 취지와 노들섬에 조성된 시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노들섬 복화문화공간’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해됨.

○ **이용료** (안 제5조)

-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복합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용료의 과다 징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조례안에서 전시관 이용료 부과만 규정되어 있고, 이용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반환권의 제약 소지가 있으므로, 이용료 반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2019) 결과, 총 96개 조항(조례 57개, 규칙 5개)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법규의 개정을 권고했던 사항 중 하나임.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I 차별 및 인권침해	II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III 시민참여보장
개선점	인권친화적 행정기반 구축	문화권,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참여(참정)권, 평등권
인권 침해 (제한) 분야	1.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 2. 편견이나 선입견 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조항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면제)의 올바른 적용여부 5. 반환권 제약 (공공시설 이용 사용시 반환조항이 미비한 경우) 6. 구제권 제약 (과태료 부과징수의 법 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 여부)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여 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주차요금 (안 제6조)

- 복합공간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기준은 인근 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주차장 조례”) (별표 1) 의 3급지에 대한 주차요금을 참조하여 정하였으나, 조례안 별표 2의 월 정기권 5만 원의 경우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월 10만원으로, 1일 주차요금은 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노들섬 근무자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

<조례안 별표 2>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1회주차(1구획)		1일주차	월정기권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최초30분 1,000원	300원	10,000원	50,000원

<주차장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대관료 (안 제9조)

- 조례안에서 복합공간의 시설에 대한 대관자의 대관료 납부 의무는 있으나, 대관을 취소할 경우 대관료의 반환에 대한 규정은 없음.
- 현재 대관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들섬 특화공간 대관규정」

에서 라이브하우스와 다목적홀(제17조), 옥외 공간(제22조), 기타 공간(서가, 뮤직라운지, 제27조)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붙임-3 참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를 위한 일환으로, 사용기간 이전 취소 시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선납액 전부를 반환하되, 필요시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한은 총액 10% 이내로 제한토록 하는 등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20.9, 붙임-4 참조)하고 있음.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옥내와 옥외, 기타 공간으로 구분하여 대관 환불규정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 제정안에 대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추후 복합공간 대관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대관 취소 환불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업무는 '21년 1월부터 도시재생실에서 문화본부로 이관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임경숙
연락처	02-2180-8205
이메일	kslimga@seoul.go.kr

【붙임-1】 노들섬 특화공간 위탁운영 현황 (출처: 재생정책과)

□ 위탁사무 및 사업비

○ 위탁사무

- 노들섬 조성시설(건축물 및 부대공간) 관리·운영
- 노들섬 비전수립, 각종 프로그램 기획·실행 및 홍보 등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

- 장기적으로 시설운영 경과에 따라 경험누적 및 실적수입이 안정화 되면 수익 창출형 전환 검토

○ 위탁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720	558	2,579	2,707	1,065

□ 위탁운영 현황

○ 운영방식 : 민간위탁(시설 및 예산지원형 위탁)

○ 수탁자 : (주)어반트랜스포머(경영, 기획, 공간운영 등), 플렉스앤코(공연)

- 직원 : 25명 상주근무 중, 시설관리 용역업체(BTMS) : 14명 상주

○ 위탁기간 : 2018. 6. 25 ~ 2021. 6. 24. (3년)

○ 위탁금액 : 총 67억 2천만원

○ 위탁사무 : 노들섬 기획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경영(운영총괄, 경영지원, 재정·회계) 및 기획(사업기획, 협력사 유치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홍보
- 공간운영(공연장 운영, 직영시설 운영, 임대·대관시설 관리 등)
- 건축물관리(건축, 전기, 소방, 기계, 공연장), 외부공간 관리(조경, 보안, 미화)

【붙임-2】 시설현황 및 시설 세부내역 (출처: 재생정책과)

□ 시설현황



[라이브하우스]



[노들섬 전경]



[중정]



[노들서가]

○ 직영시설 세부내역 : 7개소(대관가능)

연번	시설명	면적(m ²)	내용
1	라이브하우스	1,985.13	대관 회전율이 높은 대중음악 전문 중규모 공연장 및 리허설스튜디오
2	노들서가	973.87	출판사와 독립책방 등 책 문화 생산자들의 큐레이션 플랫폼
3	스페이스 445	1,032.45	노들 갤러리 및 작품 제작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아트숍 운영
4	뮤직라운지 류	393.38	공연장과 더불어 다양한 음악적 경험 제공을 제공하는 음악 테마의 공간
5	엔테이블	143.9	음식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는 다목적 시민 공유 주방
6	잔디마당·노들스퀘어	10,208.76	한강과 빌딩, 도심을 조망하는 확장성을 가진 대규모 시민 휴게 공간
7	다목적홀 숲	1,251.24	노들숲으로 열린 자연 속의 전문 대관 공간인 다목적 홀과 강의실

○ 사용수익허가(임대)시설 세부내역 : 15개소

연번	시설명 (면적㎡)	업체명	상호	내용	
1	자전거문화 라운지 (243.18)	(주)엠아이식스	바캉스온아일랜드	자전거 수리 및 관련 판매와 문화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자전거 카페	
2	뮤직펍 (98.8)	복순도가	복순도가	뮤직라운지와 연계된 프리미엄 전통발효주 판매 바(bar)	
3	지속가능 패션 스튜디오 (150.11)	코오롱인더스트리 (주)FnC부문	래:코드	지속가능패션 관련 워크숍, 전시 등이 함께 진행되는 작업 아틀리에	
4	체인화편의점 (65.72)	(주)베어베터	이마트24 with 베어베터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베어베터가 운영하는 편의점	
5	노들상점 (47.19)	(주)담아요	피크닉(Picnic)	노들섬에서 활용 가능한 피크닉 및 나들이 용품의 판매 및 대여 상점	
6	노들마켓 상설매장 (95.95)	(주)어반트랜스포머	차츰	작가와 작품을 연결하고 마음이 담긴 물건을 판매하는 상설형 마켓 매장	
7	레스토랑B (287.87)	(주)브레드 인 스마일	더피자사운즈, 청담동 마녀김밥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이태리 나폴리 피자 매장과 김밥 전문 음식점	
8	노들서가 카페 (55.87)	(주)어반트랜스포머	카페 북	노들서가 2층에 위치한 전문 카페	
9	오피스A (121.15)	프로덕션 C		문화와 예술 중심의 축제와 컨퍼런스 기획, 국내외 뮤직 마켓 사업 대행 등	
10	노들 오피스	오피스B (52.12)	JNH뮤직, 쿨스뮤직		전제덕, 박주원 등 뮤지션 소속 매니지먼트 및 제작사와 해외 음원 라이선싱 및 아티스트 발굴 레이블
11		오피스C (52.12)	플러드 프로덕션		콘서트, 시상식 등 공연문화 기획 및 제작 전문 제작사
12		공방A (23.9)	아틀리에 생강		식물을 모티브로 한 향기와 퍼퓸 오브제 작업공방
13	식물도	공방B (19.3)	앤어플랜트		일상 속 식물, 공간, 사람에 대해 연구하고 실험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14		공방C (18.3)	어반이슈		식물과 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가드닝 편의점
15		공방D (15.8)	우리에그린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원예치료 그룹

【붙임-3】 노들섬 특화공간 대관규정

제3장 대관료

제1절 통칙

제12조(대관료) ① 대관 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장치 장비 등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외에 부대시설, 추가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비용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대관료의 할인 및 할증)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은 각 대관 사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를 통해 정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중 서울시 주관 부서장이 승인하여 대관료 감면을 요청한 행사에 대해서만 대관료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2. <삭제 19.12.13.>

3. 운영자가 협력유치 혹은 후원하는 행사는 대관료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12.13.>

4. 총감독의 승인하에 운영자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 하는 행사는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5. <삭제 19.12.13.>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할증할 수 있다.

1. 기업 홍보 목적이 명백한 행사는 대관료의 150% 할증할 수 있다.

2. 영화, 광고, 방송 등 상업 촬영을 위한 행사는 대관료의 150% 할증할 수 있다.

제2절 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의 대관료

제14조(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 대관료의 납부) ① 대관 사용자가 시설물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예상대관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대관 사용자는 대관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예상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운영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대관료 잔금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개시일 30일 이전에 사전 대표행위를 위한 관람권 발행 시 티켓 발매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 승인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예상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추가설비 사용료는 운영자가 정하는 별도 지정일까지 정산한다.
- ⑥ 8일 이상 공연의 경우 매주 월요일은 공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관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단, 대관자의 요청으로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승인할 수 있다.
- ⑦ 대관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 기간 내 휴관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준 대관일에 휴관일을 포함하여 예상대관료를 책정해야 한다.
- ⑧ 대관 사용자가 추가 대관료 및 부대시설 등을 운영자가 지정한 날까지 미납하였을 경우 본 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관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 대관료 계산방법) ① 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의 대관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의 예상대관료 계산은 행사 준비, 행사 진행 기간, 철거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세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준비·철수 대관료는 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진다. <신규 19.12.13.>
2. 행사 대관료는 1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행사가 진행되는 날은 준비대관료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3. 행사 준비 및 철수 시 사전에 계약된 구간 이외 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운영자의 판단으로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철야요금을 시간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제16조(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 대관료 정산) ① 운영자는 대관에 따른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예상대관료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정산하여 부족한 대관료는 대관 사용자에게 추가 납부토록 조치하고, 예상대관료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초과하였을 때는 이를 대관 사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의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납부 지정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연리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17조(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 대관료의 반환 및 취소위약금)

①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운영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대관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대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각 기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비율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취소위약금으로서 몰취한다. 단, 취소시까지 대관 사용자가 납부하였어야 할 대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몰취에 더하여 그 미납 대관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1.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60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대관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 : 전부 취소시까지 납부된 대관료의 50% (단, 사용기간 또는 사용공간의 일부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기간 또는 공간의 비율만큼 일할 계산)
2.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이 남은 상황 또는 사용개시일 이후에 대관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취소시까지 납부된 대관료의 100%
-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운영자는 제5조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절 옥외 공간의 대관료

제18조(옥외 공간 대관공간의 범위) ① 옥외 공간은 노들마당(잔디마당, 노들스퀘어, 노들스탠드) 및 기타 실외 공간을 말한다. <신규 19.12.13.>

② 옥외 공간은 분할 대관이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들스퀘어는 m²단위로 분할 대관이 가능하다. <신규 19.12.13.>

③ 옥외 공간의 대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규 19.12.13.>

구분		면적(m ²)	비고
노들 마당	잔디마당	2,953	
	노들스퀘어	4,038	
	노들스탠드	864	
기타 옥외 공간	마켓 뜰	817	
	서가 뜰	325	
	라이브하우스 뜰	456	
	다목적홀 뜰	251	
	서가 루프탑	533	
	숲 루프탑	516	
	테라스	192	

제19조(옥외 공간 대관료의 납부) ① 대관 사용자가 시설물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예상대관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금 및 잔금의 납입기일은 사용개시일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관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정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이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금은 14일

이내, 잔금은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은 예상대관료의 30%로 한다.

④ 대관 사용자는 잔금에 한하여 대관료의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옥외 공간 대관료 계산방법) ① 옥외 공간 대관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옥외 공간의 기본대관료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간 산정방법 : 옥외 공간을 점유하는 기간과 행사 준비 시점부터 철거 기간 완료 시까지의 대관 사용승인 기간 전 구간

2. 세부 산정방법 : 전일 대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음 각 목의 일부 사용료를 징수한다.

가. 3시간 이하는 기본대관료의 35% 징수

나. 3시간 초과 ~ 6시간 이하는 기본대관료의 70% 징수

다. 6시간 초과 시는 기본대관료의 100% 징수

③ 제2항 이외의 관리비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징수한다.

제21조(옥외 공간 대관료 정산) ① 운영자는 대관에 따른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납부된 대관료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정산하여 부족한 대관료는 대관 사용자에게 추가 납부토록 조치하고, 납부된 대관료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초과하였을 때는 이를 대관 사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관 사용자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의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납부지정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연리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22조 (옥외 공간 대관료의 반환) ① 운영자의 귀책사유 및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운영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대관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한 대관료 반환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5조에 의거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기본대관료가 300만 원 이하인 야외행사의 경우 기상상태로 인해 행사 진행이 불가하여 대관 사용자가 명확한 증빙자료와 함께 취소 요청할 경우 대관료 반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의해 대관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설사용이 중지되었을 때는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3조(옥외 공간 취소위약금) ① 대관 사용자가 대관 승인을 받은 후 대관 신청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소위약금을 징수한다.

1. 계약금만 납부한 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과 관계없이 계약금 전액 몰취 (단, 취소시까지 대관 사용자가 납부하였어야

할 계약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계약금 상당액을 징수한다.)

2. 잔금까지 납부한 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31일 이상 남은 경우 : 계약금에 기본대관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나.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16일 이상 30일 이하로 남은 경우 : 계약금에 기본대관료의 30%를 합산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남은 경우 : 계약금에 기본대관료의 50%를 합산한 금액

라.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6일 이하로 남은 경우 : 계약금에 기본대관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취소위약금은 예상대관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사용자가 그 대관 신청의 일부만을 취소(대관 기간의 변경도 일부 취소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

1. 계약금만 납부한 후 일부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기본대관료에 따른 계약금) + (기본대관료에 따른 계약금 × 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2. 잔금까지 납부한 후 일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31일 이상 남은 경우 : 계약금 일부취소위약금 + (기본대관료의 10% × 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나.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16일 이상 30일 이하로 남은 경우 : 계약금 일부취소위약금 + (기본대관료의 30% × 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다.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남은 경우 : 계약금 일부취소위약금 + (기본대관료의 50% × 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라.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6일 이하로 남은 경우 : 계약금 일부취소위약금 + (기본대관료 전액 × 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5. 기본대관료 외 부대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위약금의 총액은 예상대관료를 초과할 수 없고,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기본대관료 외 부대사용료 등은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와 대관 사용자가 대관 기간 전에 상호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대관 기간의 변경을 일부 취소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제4절 기타 공간의 대관료

제24조(기타 공간의 범위) ① 기타 공간은 공간의 본 기능이 있지만,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의미한다. <개정 19.12.13.>

② <삭제 19.12.13.>

③ <삭제 19.12.13.>

④ 대관이 가능한 노들섬의 기타 공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12.13.>

구분		면적(m ²)	권장프로그램
노들서가	1층	211	- 북콘서트 책 판매 기념행사, 세미나 등
	2층	190	
뮤직라운지		395	- 청음회, 음반 발매 기념 전시 및 행사 등

제25조(기타 공간 대관료의 납부) ① 대관 사용자가 시설물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예상대관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8일 이상 대관은 매주 월요일은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관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월요일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운영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대관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 기간 내 휴관을 할 때는 계약기준 대관일에 휴관일을 포함하여 예상대관료를 책정해야 한다.

제26조(기타 공간 대관료의 계산방법) ① 기타 공간의 대관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전에 계약된 구간 이외 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대관료의 계산은 행사 준비, 행사 진행 기간, 철거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노들마켓 부분 대관의 대관료 산정은 기본대관료의 제곱미터당 기준 가격에 사용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7조(기타 공간 대관료의 반환 및 취소위약금) ①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운영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대관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대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각 기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비율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취소위약금으로서 몰취한다. 단, 취소시까지 대관 사용자가 납부하였어야 할 대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몰취에 더하여 그 미납 대관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1.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대관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 : 전부 취소시까지 납부된 대관료의 50% (단, 사용기간 또는 사용공간의 일부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기간 또는 공간의 비율만큼 일할 계산)

2.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이 남은 상황 또는 사용개시일 이후에 대관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취소시까지 납부된 대관료의 100%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운영자는 제5조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붙임-4】 국민권익위원회 대관료 관련 권고 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①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input type="checkbox"/> 대관공고는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 준용 <input type="checkbox"/> 신청서는 비대면 예약시스템으로 접수, 불공정·부패요인 제거 <input type="checkbox"/> 대관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50% 이상, 제척·기피·회피제,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공개 등 필수 보장장치 마련 <input type="radio"/> 우수작품 선정 결과, 특정단체 독점 현상의 해소방안 강구 <input type="radio"/> 경합인 수시대관은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②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대관 혜택 제공하는 규정 폐지 및 신설 금지 <input type="checkbox"/> 법령 위임 없는 대관 신청자격 또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 폐지	
③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input type="checkbox"/> 사용료는 국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기준 준수 <input type="radio"/> 동일 시설물의 요금제 종류 및 금액편차 최소화 <input type="radio"/>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 금지 <input type="checkbox"/> 면제 부가가치세의 사용료에 포함 징수 오류를 정비	
④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input type="checkbox"/> 사용취소 위약 미반환금 10%이내 최소화, 특정시점까지 전액반환 등 과오납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기준 명확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input type="checkbox"/> 사용료 미반환으로 부당수익 못하도록 국·공유재산 운영기관에 ‘사용료 표준 환불지침’ 전파 <input type="checkbox"/> 계약보증금 등 납부방식, 허가조건 변경 등 사용조건의 공정성 확보	
⑤ 중요정보 공개로 행정 효율성 제고	<input type="checkbox"/> 대관절차, 사용료 납부방식, 시설물, 환불정책 등 이용자에 필요한 중요정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